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전 문

아시아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은,

2005. 9. 8. 몽골 울란바토르 개최 제3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합의된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 창설을 위한 MOU를 상기하며,

2007년 10월 이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가 쌓아온 업적을 평가하며,

아시아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아시아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시아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의 발전을 위한 경험의 공유, 정보의 교환, 헌법 실무 및 헌법학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시아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으로 구성된 상설연합체의 창설이 소속 회원간의 협력을 크게 증진시키고 경험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호 존중 및 사법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 입각하여 연합체 창설을 위한 아래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연합체의 명칭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이하 “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법적지위

연합은 자율적, 독립적, 비정치적 조직으로서, 이 규약에 따라 운영된다. 연합은 연합 밖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 목 표

연합은 아래사항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 ① 인권보호
- ② 민주주의 보장
- ③ 법치주의 구현
- ④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
- ⑤ 회원 간 협력 및 경험·정보의 교류

제4조 기 능

제3조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연합은 아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의 행사를 조직한다.
- ③ 헌법판례법 또는 헌법재판에 관한 경험 공유를 활성화한다.
- ④ 업무방식 및 헌법판례법에 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 ⑤ 공법 및 헌법재판 관련 제도적, 구조적 및 운영적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활성화한다.
- ⑥ 연합의 목표 보장·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들이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 ⑦ 회원 간 정기적 접촉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 ⑧ 필요 시 헌법 관련 기구와 협력한다.

제5조 공식언어

1. 연합의 공식언어는 영어로 한다.

2. 모든 회원은 자비를 전제로 동시통역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시통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연합의 의장은 통역사로 하여금 특정 대표단의 발언을 해당 대표단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영어로 통역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가입자격

제6조 회원자격

1. 아시아 주권국가의 1개 기관만이 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연합의 회원자격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기관으로 한다.
3. 회원은 연합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다.

제7조 회원가입

1. 연합 회원가입을 위한 서면 신청서는 이사회 앞으로 발송하며, 연합의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신청서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서류를 동봉하도록 한다.
 - ① 가입신청 재판소/기관의 설립·구성 및 재판관/위원 임명 관련 법률문서
 - ② 가입신청 재판소/기관 관할권의 특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문서
 - ③ 가입신청 재판소/기관 수장이 서명하여 연합의장 앞으로 보내는 연합규약 동의서한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즉시, 연합 의장은 접수 신청서 및 서류 사본을 전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4. 회원가입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회원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연합 탈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탈퇴의사 표명은 연합 의장 앞으로 한 서면 통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연합과 특정 회원 간의 효과적 협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 회원자격 상실 결과는 연합 의장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연합 의장은 전 회원들에게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이름을 통지하도록 한다.

제3장 옵서버 및 게스트

제9조 옵서버

1. 옵서버 지위는 초국가적 법원,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에 부여된다.
2. 옵서버에게는 아래 사항이 허용된다.
 - ① 총회에 참석한다.
 - ② 연합 의장의 사전 요청에 의하여, 총회의 구체적 주제 관련 보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 ③ 담당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질의에 대답한다.
 - ④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연합의 행사에 참여한다.
3. 연합의 옵서버 지위 취득을 위한 서면 신청서는 이사회 앞으로 발송하며, 연합의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옵서버 지위 신청서 접수 즉시, 연합 의장은 접수 신청서의 사본을 전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5. 옵서버 지위 승인은 이사회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6. 모든 회원은 차기 총회의 옵서버 초청대상을 제안할 수 있다. 동 초청 안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0조 게스트

연합의 의장은 게스트를 총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연합의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제4장 조 직

제11조 조직

연합은 이사회 및 총회로 구성된다.

제5장 이사회

제12조 구성

이사회는 회원지위를 가진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로 구성된다. 각

수장은 사무처장을, 또는 필요 시 다른 헌법재판소/기관 또는 그 사무처의 구성원을 동행하도록 한다.

제13조 권 한

이사회는 중앙의사결정 기구이며 아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 ① 회원의 가입, 자격정지 및 탈퇴
- ② 옵서버 및 게스트의 승인 및 거절
- ③ 총회의 시간·장소 및 회의 주제 결정
- ④ 총회 예산의 승인
- ⑤ 총회의 재정 부담금 결정
- ⑥ 제3자의 기부금 승인
- ⑦ 총회 결과 선언문의 채택
- ⑧ 연합규정의 작성
- ⑨ 연합규약의 개정
- ⑩ 연합의 해체
- ⑪ 총회의 권고에 대한 결정
- ⑫ 연합 향후 2년 간의 실무계획 채택
- ⑬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연합 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

제14조 의장직

1. 연합의 의장은 차기 총회 개최 예정인 회원의 수장으로 한다.
2. 연합의 의장은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주재한다. 의장은 필요 시 참석한 회원의 수장을 지정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회 의

1. 이사회는 가능한 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최소 1회, 그리고 원칙적으로 총회 전날에 개최한다.
2.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총회 전날과 폐회 전에 개최한다.
3.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총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차기 총회 개최 6개월 이전에 개최한다. 이사회는 필요 시 그 이외의 다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결정은 회람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의 제

1. 연합의 의장은 모든 회원에게 이사회 개최 최소 3개월 전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서면 초청장에는 회의의 잠정 의제를 동봉하도록 한다.
2. 잠정 의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① 개별 토론 주제
 - ② 연합의 향후 2년간 예산 및 재무제표
 - ③ 연합 활동 보고
 - ④ 총회의 권고 안
 - ⑤ 연합 의장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 사항
3. 의사결정 사항은 회의 의사록에 기록하며, 사무국이 회의 의사록의 작성을 담당한다.
4. 회원은 회의 의사록을 제공받도록 한다.

제17조 회의 장소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국에서 개최한다. 특별한 경우 이사회는 다른 개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정족수

1. 이사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2. 재판소 또는 재판기관의 재판관/위원, 사무처장 등은 각 수장을 대신하여 회의에 대리 참석, 표결을 할 수 있다.

제19조 표 결

1. 이사회는 참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2. 회원은 각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총 회

제20조 구 성

회원, 옵서버 및 게스트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옵서버와 게스트는 표결이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회 의

1. 연합은 기본적으로 2년에 1회 총회를 개최한다.

2. 총회에는 토론세션 및 개·폐회세션이 포함된다.
3. 총회는 개회세션으로 시작되어 폐회세션으로 종료된다.
4. 이사회는 총회에서 개최되는 분과회의 등의 의장을 지정한다.
5. 총회준비 이사회 및 총회 시, 회의 개최 회원은 업데이트 된 회원, 옵서버 및 게스트의 참석 명단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한다.

제7장 사무국

제22조 사무국

연합의 사무국은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이 제공하도록 한다.

제8장 재 정

제23조 재정의 원칙

1. 이사회 및 총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행사의 일반 개최비용은 주로 회원들의 동등한 분담에 의하여 총당된다. 단, 각 분담금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개별 역량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2. 총회 개최 회원은 연합 사무국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3. 이사회는 옵서버로 하여금 총회 개최비용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기여금은 회원들의 분담금을 고려, 옵서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청구된다.
4. 모든 형태의 제3자 기부금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접수여부가 결정된다.
5. 총회 개최 회원은 가능한 한 최소 총회 6개월 전까지 총회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6. 회의 총 비용은 총회 개최 회원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총회 종료 이후 정산한다.

제24조 회원의 재정기여

1. 회원은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2. 이사회 및 총회의 일반 개최비용은 아래와 같다.
 - ① 회의장 임차비
 - ② 인쇄비
 - ③ 문서 번역비

- ④ 통역비
- ⑤ 간접관리비
- ⑥ 현지 교통비

3. 이사회는 아래 비용이 이사회 및 총회 일반 개최비용에 포함될 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 포함될 지를 결정한다.

- ① 식비
- ② 레크리에이션 행사 비용
- ③ 연합 홈페이지 제공에 따른 특별비용
- ④ 보안 비용

4. 이사회는 이사회 및 총회 일반 개최비용에 회원 당 몇 명의 대표에 대한 비용이 포함될 지를 결정한다.

5. 이사회 및 총회 일반 개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개별적으로 청구된다.

6. 총회 개최 회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다.

제25조 옵서버의 재정기여

1. 옵서버는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2. 옵서버에게 식비 및 레크리에이션 행사 비용으로 구성된 개별 참가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특별 프로그램 비용은 옵서버에게 청구된다.
4. 개별 참가비는 총회 예산안을 기초로 결정한다.
5. 총회 개최 회원은 식비, 레크리에이션 행사비 및 특별 프로그램 비용과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기여금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 게스트의 재정기여

1. 게스트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2. 게스트는 총회 일반 개최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식비 및 레크리에이션 행사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3. 특별 프로그램 비용은 기본적으로 게스트에 청구된다.
4. 회의 개최 회원은 위에 명시된 항공료, 숙박비 및 특별 프로그램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또한 특별 프로그램 비용이 일부 또는 전부 총회 일반 개최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9장 기타조항

제27조 연락관

1. 회원은 각 1인의 담당관을 연락관으로 지정한다.
2. 연락관은 회원 간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8조 좌석배치

1. 총회에는 회원에게는 각 5개 이하, 옵서버에게는 각 2개 이하의 좌석이 배정된다. 회원은 전열에, 옵서버는 후열에 착석한다. 회원과 옵서버의 좌석은 기본적으로 국가 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치된다.
2. 게스트의 좌석은 총회 개최 회원에 의하여 배치된다.

제29조 언론 및 홍보

1. 언론매체(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는 총회 개최세션에 초청된다.
2. 토론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3. 기자회견은 폐회세션 이후, 필요 시 다른 총회 참석자들이 동반 참석한 가운데, 연합의 의장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다.

제10장 최종조항

제30조 해 체

연합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다.

제31조 원 본

이 규약은 영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 작성된다.

제32조 발 효

이 규약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의 회원인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 기관의 수장 또는 위임대리인이 모이는 회의에서 채택되는 날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약을 채택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회원은 창립회원이 된다.

_____에서 2010. _____ 채택